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자성명		생년월일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내·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 ⑨+⑩)	⑥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⑦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⑧ 직불· 선불 카드 (전통시장·대중교 통 제외)	⑨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직불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⑩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	국세청 자료						
			-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	그 밖의 자료						
⑩ 합 계 액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⑪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⑨×30%)	⑫ 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 (⑩×30%)	⑬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액 (⑦+⑧)×30%	⑭ 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 (⑥×15%)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⑮-1 총급여	⑮-2 최저사용금액 (⑮-1×25%)	⑮-3 공제제외금액
⑯ 공제가능금액 (⑪+⑫+⑬+⑭ -(⑮-3))	⑰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⑮-1)×20% 중 작은 금액)	⑱ 일반 공제금액 (⑬과 ⑰ 중 작은 금액)	⑲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⑭-⑰(음수이면 0으로 봄)과 ⑪ 중 적은 금액 (한도: 1백만원))	⑳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⑫-⑱(음수이면 0으로 봄) 과 ⑩ 중 적은 금액 (한도: 1백만원))	㉑ 최종 공제금액 (⑱+⑲+⑳)	

⑮-3 계산

구 분	계산식	⑮-3
⑮-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	(⑮-2) × 15%	
⑮-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	(⑥×15%) + {(⑮-2)-⑥}×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상 대중교통 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승차권 등)
이 경우 ⑥ ~ ⑩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㉑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